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1.25(목) / 총1매(본문1)
담당부서	주택정비과	·과장 유삼술, 사무관 유상철 ·☎ (044) 201-3392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

-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“입법정책의 문제일 뿐,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”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.

* 토지초과이득세('94.7.29 선고, 92헌바49), 종합부동산세('08.11.13. 선고, 06헌바112)

- 다만,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,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.
- 재건축부담금은 입법당시부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, 법률자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헤럴드경제 1.25.) >

- ◆ 국토부 ‘엉터리(?)’ 해명..... 재건축부담금 위헌 논란 가열
 - 미실현 이득 과세에 대해 국토부가 현재는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현재는 해당 문제에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.
 - 현재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“위헌” 혹은 “합헌”이란 판단 내린바 없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정비과 유상철 사무관(☎ 044-201-33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